

우려 대상자 관련 사역 선언문

Declaration Regarding Ministry with Persons of Concern

[교회 이름]는 우려 대상자에 대한 호주 침례교 대응 절차(Australian Baptist Response to Persons of Concern process)에 명시된 절차를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아래 해당 사항에 표기하세요):

- A. 우려 대상자로 알려진 사람이 교회 구내에 진입하거나 특정 교회 프로그램, 활동 또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 B. 우려 대상자가 있을 경우 NSW & ACT 침례 교단 사역 표준 관리자(Ministry Standard Manager)에게 고지한 후 사안별 위기 관리 절차를 제공받아 관리한다.

위의 결정을 내릴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 1) 우려 대상자 관리 절차(Persons of Concern process)는 위험 관리 원칙(risk management principles)에 따라 사례별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위험 가능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려 대상자에게 어떤 교회 프로그램, 활동 또는 행사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
- 2) 침례교 보험서비스(Baptist Insurance Service)는 알려진 범죄자(known offender) 또는 알려진 범죄자인지 합리적으로 확인되었어야 하는 사람에 의해 야기된 피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 3) 알려진 범죄자에 의해 야기된 교회의 피해가 발생될 때 피해 교회는 보험의 대안으로 NSW & ACT 침례교단 금융 및 위험 위원회(Finance and Risk Committee)에 긴급 재정 지원 (contingency fund)을 요청할 수 있다:
 - a) 해당 긴급 재정 지원금은 최대 \$ 75,000 까지 법률 절차 비용(legal fee)을 지원한다.
 - b) 교회는 \$ 5000 의 기본 부담금(excess fee)를 지불해야 한다.
 - c) 해당 긴급 재정 지원금은 NSW & ACT 침례교단 사역 표준 관리자의 조언에 따라 우려 대상자 관리 절차(Persons of Concern process)를 준수하는 교회에 지원된다.
- 4) 우려 대상자 절차를 개발할 시 개별적으로 책임 및 안전 동의서(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Safe Agreement) 작성이 필요한 경우 교회가 진행 비용을 부담한다. 이 비용은 우려 대상자 관리 절차 개발 전체 비용에 대한 것이 아니며 NSW & ACT 침례교단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한다.

일반 교회 출석(자녀 포함)	금액*:
0 – 50	\$250
51 – 100	\$500
101 – 150	\$1000
151 – 250	\$1500
251 – 350	\$2000
351+	\$2500

*위의 금액은 2019 년 수치로 변경될 수 있다.

교회의 통치 기구가 본 문서를 읽고 이해했으며 [날짜 _____]에 상기한 바와 같이 우려 대상자 관리 절차를 채택하는데 동의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서명: _____

이름: _____

직위: _____

누가 우려대상자인가?

우려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법정에서 성범죄에 대해 인정했거나, 유죄가 선고되었거나,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
2. 채용(심사)과 관련된 심사 절차에서, 과거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사람.
3. 현재 성범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4.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아 왔지만 이에 대해 적절하게 조사받지 않은 사람.
5. 성적인 부적절한 행위 (sexual misconduct) 로 인해 위험 평가에서 부정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6. 성적인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부정적 위험 평가를 받았고 아동이나 취약 성인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7. 타인에 대해 계속해서 성적 경계선(sexual boundaries)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인 사람.

'알려진 범법자'(Known offender) 보험사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

보험상 위치 (Insurance position)에 대한 설명

현재 호주의 모든 침례교회에 적용되는 일반책임보험정책(General Liability Insurance Policy)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 3 자(예: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 손해 또는 법적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exclusion clause)이 존재한다:

제 1 부 – 부상 피해(injury)가 직간접적으로 성적 학대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 성적 학대의 가해자가 피보험자의 대표자, 회원, 직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이며

제 2 부 – 피보험자(the insured)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과거 성범죄 전력이나 성범죄 유죄선고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가해자가 피보험 기관의 대표자, 회원, 직원 및 서비스 제공자인 상태에서 제기된 성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위 '우려 대상자' 목록 1-4 번)

우리는 우려대상자가 예배하고 싶어 하거나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고 또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거나 이미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교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문서는 우려대상자에 대해 교회가 7 단계 관리 절차를 개발함으로써 교회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만약 우려대상자에 대한 관리 절차를 준수했으나 이들이 재범을 저지르고 보험사의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시 피해 교회는 NSW & ACT 금융 및 위험 위원회의 임시 기금에서 시행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우려대상자

또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우려대상자들도 있는데, 이들로 인해 발생한 교회의 피해는 일반 책임보험정책(위의 우려대상자 목록 5-7 번)에 의해 보상된다. 우리가 이들을 우려대상자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각 교회가 상황에 맞게 이 절차를 수정해 나가면서 명확하고, 투명하고, 목회적인 방식으로 그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우려 대상자가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